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6 선고 2019가단1705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11. 26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,342,161원 및 그 중 283,941,900원에 대하여 2019.1. 26.부터 2019. 9. 11. 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2019. 9. 12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%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3. 일부기각의 이유 :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

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된 것)및 동 부칙

제2조 제2항에 따라, 원고의 청구 중 연 12%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.

다만,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피고들이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,

판사 이준구

별지